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14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홍기원 · 박희승

정동영・강준현・박민규

민형배 · 조계원 · 허종식

문대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 헌법」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. 현행 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대한민국 헌법」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,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

록 하되,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은 상실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(생 략)	제11조(계엄의 해제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	2
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	
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
	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
	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
	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
	은 상실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